



제420회국회(임시회)
제 1 차 교 육 위 원 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교육재정교부금 재원 중 담배부와 개별소비세 비율 변경〉
■ 신정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475호)

2024. 12.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 목 차 】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신정훈의원 등 12인
2. 발의연월일 : 2024. 11. 12.
3. 회부연월일 : 2024. 11. 1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3조제2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을 내국세 총액에서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의 100분의 45를 제외한 금액의 1만분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규모가 정채되거나 축소되면서 이를 재원으로 하는 소방안전교부세 사업비 규모가 정채되거나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증대하는 국민들의 소방 및 안전 투자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많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및 안전 투자에 필요한 재원 확충을 위하여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이 되는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비율을 현행 100분의 45에서 1만분의 7,799로 상향하고자 함.

다만, 소방안전교부세 일정율이 인상됨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이 되는 내국세가 감소하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대상 내국세 총액에서 제외하는 세목 중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를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로 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을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만분의 1,143으로 개정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감소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신정훈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47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476호)」에 따라 소방안전교부세 일정율을 인상하는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이 되는 내국세가 감소하므로, 이를 보전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 중 담배부과 개별소비세 비율을 변경하는 내용임(안 제3조제2항 제2호).

현행	개정안
제3조(교부금의 종류와 재원) ① (생략)	제3조(교부금의 종류와 재원) ① (현행과 같음)
② 교부금 재원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_____ -----.
1. 해당 연도 내국세[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 담배에 부과하는 <u>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u>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稅目)의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총액의 1만분의 2,079	1. ----- ----- <u>개별소비세</u> ----- ----- ----- -----
<신설>	2. 담배에 부과하는 <u>개별소비세 총액의 1만분의 1,143</u>
2. (생략)	3. (현행 제2호와 같음)
③·④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현행법에 따르면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는 소방안전교부세¹⁾²⁾ 45%, 내국세 55%로 각각 배분됨.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를 그 재원으로 하는데³⁾, 이에 따르면 담배분 개별소비세 중 11.43%(담배분 개별소비세의 55% * 20.79 = 11.43%)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이 됨.

개정안은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이 되는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비율을 현행 45%에서 77.99%로 상향하는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476호)」의 의결을 전제로⁴⁾,

1) 지방교부세 중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안전관리 강화 및 시설확충 소요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부하며, 개별소비세 담배분의 45%를 그 재원으로 함.

[지방교부세의 구분]

구분		목적	재원
보통 교부세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행정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내국세 정률분 ^{주)} 의 97%
특별 교부세	지역현안	지연현안에 대한 특별한 재정수요 대응	내국세 정률분의 3% × 40%
	재난안전관리	재난복구 및 안전관리 수요 대응	내국세 정률분의 3% × 50%
	국가지방협력	국가적 장려사업 및 국가·지방 협력사업 촉진	내국세 정률분의 3% × 10%
부동산교부세		지방세(종합토지세)를 국세(종합부동산세)로 전환한 후의 지방재원 감소 보전	종합부동산세의 100%
소방안전교부세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안전 관리 강화 및 시설 확충 수요 대응	개별소비세 담배분의 45%

주) 내국세 정률분: 내국세에서 개별소비세 담배분의 45% 및 종합부동산세·목적세를 제외한 것의 19.24%
 자료: 행정안전위원회,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의안번호 제2204198호)”, 2024.11.

2) 소방안전교부세는 2015년 도입되었는데, 2020년 소방직 국가직화 추진등에 따라 담배분 개별소비세의 20%에서 45%로 인상되었으며, 2023년도 기준 예산액은 8,692억원임.

3)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교부금의 종류와 재원) ① 국가가 제1조의 목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교부금(이하 “교부금”이라 한다)은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나눈다.

② 교부금 재원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2. 12. 31.>

1. 해당 연도 내국세[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稅目)의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총액의 1만분의 2,079

2. 해당 연도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세입액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5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 및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6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

4) 이는 담배분 개별소비세 규모 감소예상 및 이를 재원으로 하는 소방안전교부세 사업비 규모 축소 상황에서, 소방 및 안전투자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취지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이 되는 내국세가 감소하므로, 이를 보전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감소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임.

구체적으로, 개정안에 따르면 담배분 개별소비세의 11.43%에 상당하는 금액⁵⁾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이 됨에는 변동이 없음.

<현행 및 개정안에 따른 담배분 개별소비세 활용 현황>

담배분 개별소비세(100%)			
현 행	소방안전교부세(45%)	내국세(55%)	
		교부금 (55% × 20.79% = 11.43%)	내국세 지출 (43.57%)
⇓		동일	
개 정 안	소방안전교부세(77.99%)	교부금 (11.43%)	내국세 지출 (10.58%)

자료 : 교육부

개정안은 담배분 개별소비세 개정을 전제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보전하는 성격으로, 교육재정교부금 재원규모에는 변동이 없으므로 동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476호)」이 의결되는 경우 이와 상응하게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참고로, 종래 재정분권 추진방안('18.10.30.)에 따라 지방소비세·소방안전교부율 인상으로 인한 지방교육재정 감소분에 대해, 2차례 내국세 교부율 인상을 통해 보전한 사례가 있음⁶⁾.

5) 23년 기준 약 2,208억원

6)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19.1.1., '20.1.1. 시행

※ ('18) 지방소비세 11%, 소방안전교부세 20%(교부율 20.27%) → ('19) 지방소비세 15%(교부율 20.46%)
→ ('20) 지방소비세 21%, 소방안전교부세 45%(교부율 20.79%)

교육부는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시 감소되는 교부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내용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의 변동은 없으므로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임.

기획재정부는 최근 소방안전교부세율 인상('20년), 중앙정부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 등 고려시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활용한 소방안전교부세 규모 확대 필요성이 낮으므로, 이와 연관된 개정안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를 요하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185